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2005. 12. 30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06. 1. 11 시행)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"20세이상"을 "19세이상"으로 한다.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의4

나. 입법예고 :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4. 검토의견

○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치단체장에게, 주민이 180명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바

○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추므로

○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세 낮추어 19세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